

서울고등법원 2021. 12. 22 선고 2021나202950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광신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손유정

변 론 종 결 2021. 11. 17.

판 결 선 고 2021. 12. 22.

제1 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7. 20. 선고 2020가합51570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와 C 유한회사(이하 ‘C’라고 한다)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채권1)에 관하여 2016. 7. 15. 체결된 근저당권부질권설정계약을 2,865,541,56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865,541,56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원물반환(질권설정등기 말소)으로 구하다가, 당심에서 가액반환으로 변경하였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C에 위 각 채권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6. 7. 15. 접수 제63646호로 마친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의, 같은 등기소 2016. 7. 15. 제63648호로 마친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부분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피고와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2016. 7. 15. 체결된 각 근저당권부질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계약을 취소하고, 위 각 채권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6. 7. 15. 접수 제63646호로 마친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의, 같은 등기소 2016. 7. 15. 제63648호로 마친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C의 채권자로서 C를 대위하여 위 각 채권에 관하여 2016. 7. 15. 체결된 각 근저당권부질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 등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위 각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였으나, 원고의 위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논리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어 단순병합 관계에 있고, 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할 수 개의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각 청구는 단순병합 또는 선택적병합 청구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제1심법원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면서 2021. 8. 11.자 항소장 보정서에 항소취지로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만 유지하는 취지로 기재하고, 당심 변론과정에서도 따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심에서

제출한 2021. 11.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반환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은 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사해행위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반환을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예비적 청구 관련 부분은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8행부터 제5면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C는 2016. 5. 10.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채권 및 근저당권을 3,900,000,000원에 양수하는 채권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D에 계약금 39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3,510,000,000원은 2016. 7. 11. 이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2) C는 2016. 7. 15. 피고로부터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변제기 2017. 7. 15., 대출금리 연 7.5% 등으로 정하여 3,400,000,000원을 대출받아(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채권 및 근저당권 양수대금 잔금을 D에 지급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9, 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4) C는 2019. 4. 5. 제2 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제3 경매절차에서 2021. 3. 2. 매각금액 4,567,889,000원으로 최고가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으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2021. 10. 22. 매각대금을 납입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제8행의 “(이 법원 2018타채58606호)”를 “(의정부지방법원 2018타채58606호)”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제5행의 “(이 법원 2019카합5088호)”를 “(의정부지방법원 2019카합5088호)”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8행부터 제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3, 14, 16, 17, 24, 28, 30, 45호증, 을 제1 내지 4, 8,

13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하며, 달리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에서도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 판결문 제8면 아래에서 제10행의 “가. 주위적 청구”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5행부터 제7행까지의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질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C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제3 경매에서 매각되어 2021. 10. 22.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됨으로써 피고의 원물반환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가액배상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질권설정계약은 2,865,541,561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행의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3.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서 갑 제41호증을 제출하면서, C는 2016. 5. 17. 원고와 C가 2015. 12. 12. 체결한 정지조건부 투자약정 발효에 관한 의안, Q의 원고에 대한 2015. 12. 10.자

투자금반환채무를 C가 인수하여 제1 경매에 재투자하는 의안, 원고의 제1 경매 관련 투자약정의 약정이율을 월 1.5%(연 18%)로 일괄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안을 결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가 원심에서부터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다툴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보전채권을 입증할 수 있는 위 서증을 제출하지 않다가 원심에서 패소한 후 당심에 이르러서야 이를 제출한 점,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5. 12. 12. 체결한 정지조건부 투자약정은 C가 경매사건에서 근저당권부 채권을 매입하는 데에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청소년상담 및 보호시설을 신축할 부지를 확보할 목적으로 C가 투자하는 경매물건 중 적지가 나타나면 원고가 우선순위로 낙찰 받도록 해준다는 약정 하에 교부한 것인 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5. 12. 10.자 1억 8,000만 원은 Q가 P 오피스텔 8개 호실의 1순위 우선수익권부질권을 매입하는 데 투자한 것이고, 2016. 5. 16.자 2억 5,000만 원은 C가 제1 경매에서 이 사건 각 채권 및 근저당권을 매입하는 데에 투자한 것으로서

각 금융원의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갑 제41호증의 기재 내용은 2015. 12. 12. 체결한 정지조건부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도 C가 제1 경매에서 이 사건 각 채권 및 근저당권을 매입하는 데에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어 원고의 주장과 갑 제41호증의 기재 내용이 모순되는 점, ③ 갑 제41호증에는 원고와 C 사이에 2015. 12. 12. 정지조건부 투자약정이 체결되었고, 위 투자에 대한 약정이율이 월 1.5%(연 18%)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C 사이에 2015. 12. 12. 위와 같은 내용의 정지조건부 투자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④ 갑 제41호증의 작성일은 2016. 5. 17.인데, 원고와 C는 전날인 2016. 5. 16. C가 제1 경매에서 이 사건 각 채권 및 근저당권을 매입하는 데에 원고가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위 투자금에 대해 연 48%의 투자수익률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바로 다음날 2015. 12. 12.자 정지조건부 투자약정의 약정이율에 맞추어 약정이율을 변경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41호증은 2016. 5. 17.이 아니라 사후에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12행부터 제20면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사해행위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다48467 판결).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제1 경매에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목적물의 감정평가액은 8,159,758,580원이었고,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 당시 제1 경매는 4회에 걸쳐 유찰되어 최저매각금액이 2,558,900,000원으로 변경된 사실, ② C는 2016. 5. 10.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채권 및 근저당권을 3,900,000,000원에 양수하면서, 계약당일 D에 계약금 39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3,510,000,000원은 2016. 7. 11. 이전에 지급하기로 한 사실, ③ 원고는 2016. 5. 16. C가 이 사건 각 채권 및 근저당권을 3,900,000,000원에 매입하는 데 돈을 투자하기로 하여 250,000,000원을 투자한 사실, ④ J은 2016. 6. 20. C가 이 사건 각 채권 및 근저당권을 매입하는 데 돈을 투자하기로 하여 310,000,000원을 투자한 사실, ⑤ C는 2016. 7.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 3,400,000,000원을 받아 D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6. 7. 15.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각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⑥ C는 2016. 7. 15. 피고와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판단

(1)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C가 근저당권부 채권을 저가에 매수한 후 이를 실행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C는 그 영업의 일환으로 피고로부터 3,400,000,000원을 대출받아 대출금 전부를 이 사건 각 채권 및 근저당권 양수대금 잔금 지급에 사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C가 이 사건 각 채권 및 근저당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만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해준 행위는 이 사건 각 채권 및 근저당권을 취득하는 데에 자금을 출연한 원고와 J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C는 D에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원고와 J으로부터 이 사건 각 채권 및 근저당권을 매입하는 데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 합계 560,000,000원(= 원고 250,000,000원 + J 3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② 제1 경매에서 법원 배당시 투자금을 반환하고 투자수익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원고와 J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각 채권 및 근저당권이 자신들의 투자금반환채권 및 투자수익금채권의 공동담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을 것이고,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C도 이러한 기대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그럼에도 C는 이 사건 각 채권 및 근저당권 양수대금 잔금 지급을 위해 자금을 출연한 채권자 원고와 J, 피고 중에서 피고에게만 이 사건 각 채권 및 근저당권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해주었다.

④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채권 및 근저당권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뿐만 아니라 장래의 채권까지도 담보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채권액으로 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까지 마쳐주면서도 원고와 J을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에게는 아무런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목적물의 감정평가액이 약 8,100,000,000원에 달하긴 하였으나,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질권설정행위 당시 제1 경매는 이미 4회에 걸쳐 유찰되고, 특히 2016. 4. 6.에는 최저매각금액이 C의 이 사건 각 채권 및 근저당권의 양수대금인 3,900,000,000원에도 못 미치는 3,655,572,000원이었음에도 유찰되어 이 사건 대출금인 3,400,000,000원에도 못 미치는 2,558,900,000원으로 변경된 상태였는바, 이 사건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각 채권 및 근저당권을 취득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해준 일련의 행위의 전후를 비교하여 볼 때, C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C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아서라도 이 사건 각 채권 및 근저당권을 매입하는 것이 사업계속을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출 이전에 C와 거래관계가 전혀 없었고, 피고가 C와 사해행위에 관하여 통모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C는 근저당권부 채권을 매입한 후 매입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매입액보다 많은 금액을 회수함으로써 이득을 얻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각 채권 및 근저당권에 대한 투자는 상당한 투자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상적인 거래였으므로 C가 다른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이 사건 각 채권 및 근저당권에 대해 투자하는 것이라거나 위 투자로 인해 C의 변제자력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C가 이 사건 각 채권 및 근저당권에 대한 투자를 위해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질권을 설정해주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

나. 판단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다4846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는 근저당권부 채권을 저가에 매수한 후 이를 실행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인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대출 이전에는 C와 거래관계가 없었고, 피고가 그 거래상대방인 C로부터 이 사건 대출 채권액을 넘는 이 사건 각 채권 및 근저당권을 담보로 제공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C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가 C의 재정상황을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목적물은 제1 경매에서의 감정평가액이 약 8,100,000,000원에 달하고, 제2 경매에서 미납이 되긴 하였지만 6,300,000,000원에 낙찰되기도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제3 경매에서

4,567,889,000원에 낙찰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3,400,000,000원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각 채권 및 근저당권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질권을 취득하였는바, C의 이 사건 각 채권 및 근저당권 매입이 비정상적인 거래라거나 피고의 이 사건 대출이 부실대출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전문 금융기관인 피고가 C와 통모하여 이 사건 대출 및 각 근저당권부질권설정계약을 함으로써 C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이유가 없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질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이 사건 각 채권을 목적으로 하여 설정된 것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근저당권부질권이 허위채권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사정도 없으며, 달리 피고가 C와 통모하여 이 사건 대출 및 각 근저당권부질권설정계약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⑤ 피고와 같은 금융기관이 C와 같이 근저당권부 채권을 저가에 매수한 후 이를 실행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에게 채권매수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해주는 경우, 대출에 대한 담보로 매수대상이 되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채권액으로 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것이 거래관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질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고 C로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 받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피고가 금융기관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 추정 반복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구소인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말소청구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주위적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한, 판사 윤종구, 판사 권순형

별지1

목 록

1. 양주시 E 대 3,029m²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6. 7. 15. 접수 제 63645호로 마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C가 G(의정부시 AF아파트 AG-AH)에 대하여 가지는 4,421,494,799원의 확정채권
2. 양주시 E 대 3,029m²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6. 7. 15. 접수 제 63647호로 마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C가 G(의정부시 AF아파트 AG-AH)에 대하여 가지는 1,260,755,543원의 확정채권

별지2

목 록

1. 경기도 양주시		대2,690㎡
2. 경기도 양주시		대167㎡
3. 경기도 양주시		도로535㎡
4. 경기도 양주시		대2,966㎡
5. 경기도 양주시		도로35㎡
6. 경기도 양주시		대338㎡
7. 경기도 양주시		대333㎡
8. 경기도 양주시		임야257㎡
9. 경기도 양주시		임야1,701㎡
10. 경기도 양주시		대3,029㎡
11. 경기도 양주시		임야4㎡
12. 경기도 양주시		임야3㎡
13. 경기도 양주시		도로45㎡
14. 경기도 양주시		대164㎡
15. 경기도 양주시		임야342㎡
16. 경기도 양주시		도로106㎡
17. 경기도 양주시		임야581㎡
18. 경기도 양주시		임야83㎡
19. 경기도 양주시		도로338㎡
20. 경기도 양주시		도로454㎡
21. 경기도 양주시		대795㎡
22. 경기도 양주시		대1,468㎡

별지3

표

차입일자	채무액	채권자
2015. 10. 28.	100,000,000원	AJ
2015. 10. 10.	1,469,800,000원	AK
2015. 12. 10.	180,000,000원	원고
2015. 12. 12.	1,000,000,000원	원고
2015. 1. 12.	65,000,000원	AL, AJ
2016. 1. 27.	70,000,000원	AM, AN
2016. 1. 29.	230,000,000원	AN, AO
2016. 2. 1.	1,120,000,000원	주식회사 R
2016. 2. 3.	2,800,000,000원	AP
2016. 2. 3.	300,000,000원	AQ
2016. 2. 15.	200,000,000원	AR
2016. 3. 21.	218,768,160원	AS
2016. 6. 24.	530,000,000원	주식회사 R
2016. 2. 24.	60,000,000원	AT, AU, AM
2016. 3. 11.	300,000,000원	주식회사 R
2016. 3. 12.	80,000,000원	AV
2016. 3. 28.	40,000,000원	AO
2016. 5. 16.	250,000,000원	원고
2016. 6. 20.	310,000,000원	J
합 계	9,323,568,160원	

1) 원고는 2021. 11.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경기도 양주시 AI 외 21필지 대 16,434㎡’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그 취지는 청구취지와 같이 근저당권부질권설정계약의 대상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와 같이 선해한다.